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20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3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정 이유

- 교육경쟁력 강화가 지역발전의 척도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구민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 도모하고,
-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양성을 위해 민·관·학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육발전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지역교육발전 도모하기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능(안 제2조)

- 협의회는 다음 사항의 협의·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한다.
 -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
 -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
 - 우수 학교 육성·유치에 관한 사항
 -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
 -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 - 기타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나. 구성(안 제3조, 안 제5조)

- 총회와 운영위원회(실무위원회)로 운영
- 교육발전협의회(총회) : 40인 이내로 구성
 -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겸임
 - 유관기관의 장 및 교육계 원로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 가능
 - 위원은 교육계, 사회단체, 학부모 등 교육에 의견 있는 인사와 시의원, 구의원, 교육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청장이 위촉

- 운영위원회 : 10인 이내로 구성
 - 위원장 : 교육발전협의회 부의장
 - 총무 : 운영위원회에서 호선

다. 운영

- 위원의 임기 (안 제4조)
 - 임기 : 2년, 연임가능.
 - 보궐위원 : 위원 결원 시 위촉가능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
- 협의회 개최 (안 제6조)
 - 총회 : 연2회, 필요시 의장이 임시회 소집
 - 운영위원회 : 분기 1회, 필요시 임시회 개최
- 위원의 해촉 (안 제10조)
 - 직능 및 기관단체에서의 당해 직위 상실한 때
 -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때
 - 기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실비보상 (안 제12조)
 - 협의회 활동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가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5호 및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2006년 추경 예산안 편성 시 실비보상 등 필요경비 편성

다. 합의 : 필요 없음

라. 입법예고(2006. 1.19 ~ 2006. 1.31) 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영등포구의 학교환경개선과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5조에 근거하여 영등포구교육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사항의 협의 · 조정 및 사업추진을 지원한다.

1.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
2.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자문
3. 우수 학교 육성 · 유치에 관한 사항
4.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
5.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
6. 기타 영등포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3 조 (구성) 협의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운영한다.

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.

③위원은 교육계, 사회단체, 학부모 등 교육에 식견 있는 인사와 시의원, 구의원,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.

제 4 조 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5 조 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정책자문 및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 구성은 협의회 위원 중 10인 이내로 하며, 부의장이 운영위원장으로 겸임하며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 6 조 (회의운영) ① 협의회는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조 (의장 등의 직무) ①의장은 회의를 총괄하며, 협의회를 대표한다.

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8 조 (고문) ①협의회는 유관기관의 장 및 교육계 원로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②고문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며, 위원장은 자문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간사) ①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제 10 조 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직능 및 기관단체에서의 당해 직위를 상실한 때
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3. 기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 11 조 (관계부서의 협조)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설비보상 등) 본 협의회 활동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